

## 制憲憲法上 利益均霑權의 現代의 意味

신재명\*

A Modern Meaning of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Shin Jae-Myung\*

요약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 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제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ABSTRACT

Capitalism of altitude in modern society has brought a brilliant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But there is a side effect of capitalism. It is just such as alienation of labor, polarization. The need to consider th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i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his capitalism. It is considered that the present government aims at "economic democracy" slogan and also be matched. Th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means the distribution rights of workers to receive excess profits of the company. The review of thes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s thought very meaningful.

키워드 : 이익균점권(Th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제헌헌법(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자본주의(Capitalism), 적산(Enemy Property), 노동의 소외(Alienation of Labor).

\*제1저자 : 한국법률교육협회 대표

\*투고일 : 2014. 10. 30, 심사일 : 2014. 11. 30, 게재확정일 : 2014. 12. 30.

## I. 서론

유럽의 자본주의 형성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길드를 통해서 경제적 우위에 서 있는 자본가를 견제하여 왔다. 이러한 길드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전거의 양 바퀴처럼 운행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자본의 집중화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의 축이 기형적으로 커짐으로써 노동의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상생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의 물결이 높게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이익 참가 나아가 경영참가까지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오히려 IMF위기이후로 우리 근로자는 노동의 유연화 · 부품화현상으로 더욱 심화된 노동 소외감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최경환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발언과 그 실행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 보인다.\*

이에 과거 우리나라 제헌헌법 당시의 이익균점권의 조항을 조심스럽게 대안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의 동위성을 말할 때마다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사전적 의미로서 레드 콤플렉스란,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한 과민한 반응 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일반인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진보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용공(容共)으로 모는 공세를 취하는 태도

를 말한다(다음 국어사전 참조). 그런데 이익균점권조항이 우익 노동조직라고 여겨진 대한노총에서 주장되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 역시 찬성한 것을 보면, 과연 이익균점권이 사회주의국가의 소유물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이익균점권은 현대의 노동의 소외현상을 완화하여 노동과 자본 간의 동위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 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에도 부합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제헌헌법 당시 이익균점권의 논의과정과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II. 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

### 1. 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 심의과정

우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매우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이 문제시된 것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이미 제기된 문제이다. 제헌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제헌헌법의 기초는 헌법초안을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만들고, 이를 국회본회의에서 심의하는 2단계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익균점권이 제헌헌법제정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문시환의원의 수정안에서였다.\*\* 이에 조병환의원의 수정안에 제기되면서 그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최종

\* 한국경제,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 발언..어떤 의미?”, 2014. 11. 26.

\*\* 문시환의원 수정안 제17조 제3항 기업주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 이외의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

적으로 위 제18조 제2항의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즉, 문시환위원의 안에서 경영참여권이 삭제되었고\*\* 이익균점권도 사기업의 근로자로 제한되었다.

## 2.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의 이익균점권제거의 배경

### (1) 대한노총 주도의 정치적 배경

대한노총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노동조합을 기초로 규합된 것이 아니라, 좌익 측에 대항하기 위해 우익 정치인들이 급조한 소위 어용조직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한노총간부들은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라 기성 우익 정치인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익조직이 어떻게 해서 이익균점권을 주장하였을까?\*\*\*\* 그것

은 바로 이들이 좌익세력을 약화시키고 개별 노동조합으로 세를 넓혀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민심을 외면하기는 어려웠고, 기업의 국유화를 반대하는 우익의 정치논리에 따르면, 대중의 정서와 당시 국가 기구역할을 했던 미군정의 의사를 반영하는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같은 좌익에서는 이익균점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다소 의아해 할 수도 있으나, 좌익의 이념이나 정책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당시 좌익은 대부분의 경제적 자산을 국유 내지 공유화하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된 민전의 헌법구상을 보면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노동3권은 제시하였지만, 이익균점권은 주

\* 송강직,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가 범리의 향방, 동아법학 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89면.

\*\* 생각건대, 경영참가권에는 반대하면서 이익균점권에 찬성하는 견해는 격렬한 논의 중 1948년 7월 05일의 제25차 회의에서 부상하였고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지지발언을 통해 급진전된 후 통과되었으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익균점권에 대해서 실천의지는 없었고 단지 정치적 타협물로만 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강만을 정해 놓고, 법률로서 문제를 처리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회의록 510면 참조) 당시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한민당계의 의사대로 실천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익균점권의 실천의지가 없었던 사실은 제헌헌법이 완성된 이후에도 잘 드러난다. 제헌헌법 완성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반공에 투철히 집중하고 있었고, 이익균점권에 관한 어떠한 입법적 노력은 없었다.

\*\*\*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편, 1979, 278면 이하.

\*\*\*\* 1948년 06월 23일부터 국회본회의에서 공식적인 헌법논의가 시작되자, 각 층에서 다양한 헌법적 제안이 들어왔다. 그 중 대한노총의 ‘노동헌장’이 단연 돋보이는 데 그 이유는 근로자의 이익균

점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8개항 중 이익균점권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항 노동과 기술은 자본으로 간주한다. 관, 공, 사영 일체기업체에 속한 노동자는 임금 이외에 당해 기업체의 이윤 중에서 최저 30% 이상 50% 이내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각개 기업체에 대한 구체적 이익배당율은 국민경제회의의 결의를 거쳐 법률로써 정한다.

\*\*\*\*\* 신용옥, “제헌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성이념”,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9, 22-23면에서는 “국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문시환 수정안’을 적극 지지했던 의원들은 주로 전진한, 이항발, 이재형 등 대한노총계열이었으며, 여기에 수정안 제안자인 문시환의 조선민족청년단과 독촉계열의원들이 결합되었다. 대한노총은 그 발생부터 노동활동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테러단체로 활동했던 우익청년단체와 공조하여 전평을 타도하면서 성립된 만큼, 해방공간에서 국가기구로 역할했던 미국정에 의해 적극 육성되고 인가되었다. 이후 전평이 와해되고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노총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오히려 노동활동보다 이승만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되지 않았다. 민전은 이 양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매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국유 내지 공유화를 주장하였다.\* 민전은 전 산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근로자와 대중의 생존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이익균점권의 주장은 재산의 국유화처럼 공동의 개념 즉 좌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가의 기본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우익적 사고에서 안출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이익균점권은 좌익에서 주장될 수 없고, 우익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 (2) 대한노총 주도의 경제적 배경

대한노총의 이익균점권제안의 중요한 배경을 적산(敵産)처리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적산이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진, 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다음 국어사전 참조).

당시 적산의 양은 전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누가 적산을 얻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 굶주린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적산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 홍기태, “해방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 성립”,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편,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89. 179면 표 참조.

\*\*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 한국공법학회, 2002, 307면.

\*\*\* 신용욱, 전개 논문, 4면.

이에 대한노총 위원장인 전진한 의원은 “모든 산업기구 소위 적산은 민족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의 도입은 조선 산업의 전체라고 볼 수 적산을 자본가가 독점하고, 노동자가 그 밑에서 예속되어서 일해 나가느냐, 아니면 이 재산에 대해서 노동자도 한 개 발언권과 이익을 점하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였다.\*\*\*\* 즉, 이익균점권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생각에는 적산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민족의 공유물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다.\*\*\*\*\* 또한 일반대중에게도 적산은 공유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유물이라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자본가에게만 배분하게 된다면 일반 대중에게 큰 불만을 살 것이고 이는 혼돈에 휩싸인 해방조국에 더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이익균점권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큰 고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적 권력욕구이든지, 해방조국의 원활한 노자협력에 따른 경제회복의지이든지 이유에 상관없이 대한노총은 적산처리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이 적산을 국유화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의 인식을 고려하여 이익균점권이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익균점권을 논하게 된 연유는 ‘적산의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 3. 이익균점권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이 조명 받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적 헌법규정 즉, 구체적인 규범력이 부족했던 조항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법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 하였고, 후학들에게도 무

\*\*\*\* 헌법제정회의록, 466-470면 참조.

\*\*\*\*\* 황승흠, 전개논문, 310면.

분별하게 계수된 조항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 둘째, 이익균점권이 극우익 노동단체인 '대한노총'의 주도하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익균점권이 고정관념적으로 좌익의 논리로 비추어진다. 이는 실제적으로는 자본가의 재산을 옹호하고 명분상으로는 이익균점권을 주장하여 정치적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후, 이익균점권을 좌익의 논리로 규정짓고 낙인을 찍은 대한노총과 한민당계 의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정치적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 이에 따라 이익균점권을 주장할 경우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여야 하는 데, 그 극복은 우리 현대사로 볼 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에 따라 이익균점권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이익균점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진보적인 규정형태이었고\*\*, 제헌의회심의과정에서 유일한 논쟁의 핵심사항이었다. 이익균점권은 2일간 찬반격론 끝에 이례적으로 무기명투표의 방식을 거쳐 이익균점권은 통과되었고, 기업운영참가권은 부결되었다.\*\*\*

### III. 이익균점권의 현대적 의미

이익균점권이 줄 수 있는 현대적 의미로는 현재의 노동과 자본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정

\* 황승흠, 전계논문, 299면 참조.

\*\* 유진오는 이익균점권에 대하여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에는 없었던 것을 국회 본의회에서 신설한 것으로 다른 나라 헌법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정이다.”고 하였다(황승흠, 전계 논문, 300면 참조).

\*\*\* 이흥재,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의 심의의 쟁점 - 기업경영참가권 보장논의를 중심으로 -”, 노동법 연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9, 169면.

신과 시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익균점권은 노동과 자본의 동위성 회복 및 노동의 인간화,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 신장, 지속가능한 기업경영환경조성에 큰 기여할 것이다. 이익균점권은 폐지된 조항으로서 헌법연혁 속에서 있을 뿐인데, 어떻게 그 현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꾸준히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익균점권은 죽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가치가 아닌 아직 맥이 뛰고 있는 법가치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익균점권의 재규정 시 그 효과에 대해서 서술해보겠다.

#### 1. 개별 근로자에 대한 효과

전체적인 각 근로자의 자주성이 상승할 것이다. 기존 기업들은 노동지휘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성과급 내지 이윤분배제라는 이름으로 이윤을 배분해왔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당연한 권리인데 반하여, 성과급과 이윤분배제는 경영자의 동의 내지 호혜가 있어야 배분되는 것이다. 은혜적으로 배분된 이 이윤으로 경영자는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 민주노동당 경선 후보시절 노회찬 의원은 1948년 제헌헌법 18조에 명시된 ‘이익균점권’이 노동자가 기업의 이익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권리라고 설명하며 “1960년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노동자에게서 ‘이익균점권’을 빼앗아갔다.” 라고 하면서 7공화국을 건설하여 이익균점권에 부활을 공약 바가 있다(오마이뉴스, 노회찬 "다음 정부가 현 정부보다 나올까요?", 2009. 11. 18 ; 연합뉴스보도자료, 노회찬 의원, '제7공화국 건설운동' 선포 [노회찬의원실], 2007, 07. 18) ;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1980년의 헌법개정논의 중 이른바 '6인 교수안'에서 부활된다(황승흠, 전계논문, 320면 참조) ; 1987년의 헌법개정논의에서도 당시의 민주당안에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제안되었다(황승흠, 전계논문, 320면 참조).

이를 기반으로 한 근로지휘권은 근로조건 악화 예를 들자면, 장시간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했다. 만약 이익균점권이 인정된다면, 성과급 내지 이윤분배제 등을 기반으로 한 경영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휘권이 점차 약화되면서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노동조합에 대한 효과

이익균점권이 보장된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공고해 지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이 강화될 것이라 본다. 이익균점권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의 초과잉여부분을 배분받게 될 것이고 이 배분액으로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자주성을 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력 또한 상승하리라 보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 3. 사용자에 대한 효과

이익균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듯 보이지만, 반드시 기업측면에서도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에게 이익균점권을 인정됨으로써 회사의 초과이익일부분은 근로자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동기부여를 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일정부분 자본참가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그 이익을 채투자로 이어지게 유도하여 동업자정신을 고양하고 안정적인 자본의 재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근로자 또한 자신들의 이익의 감소부분을 감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단순한 소모적 쟁의행위는 스스로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4. 사회전반에 대한 효과

이익균점권이 사회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는 연유는 다음과 같다. 올바른 이익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투명한 회계처리는 깨끗한 기업 운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세수의 정확한 징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들만이 이익배분을 함에 따라 근로자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성되어 왔는데, 이러한 현상도 이익균점권이 보장된다면 완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도의 자본주의체제는 직무불만족, 노동의 소외 등은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익균점권은 근로자에게 동기를 주어 생산성 향상으로 이끌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게 할 것이다.

## VI. 결론

이상으로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살펴보고 그 현대적 의미와 이익균점권이 재규정 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기술해 보았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좌익의 논리가 아니라 우익의 논리이다. 이익균점권과 최초로 제안하고 헌법화되기 까지 주도한 단체인 '대한노총'은 우익이었으며, 기업의 국유화가 목적인 좌익 측에서는 재산권 우선 보장인 것이 전제인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논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이익균점권과 우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익균점권이 왜 일반적으로 좌익의

논리로 비추어지는 것인가? 이는 실제적으로는 자본가의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명분상으로는 이익균점권을 주장하여 정치권력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다.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대한노총과 한민당계 의원들,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미군의 회의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참가권처럼 최종안에서는 삭제조치하거나 이익균점권처럼 사법화(死法化)하여 그 용도를 사실상 폐기하였고, 이를 오히려 좌익의 논리처럼 돌려 좌익을 배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셋째, 극우익단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한 이익균점권이 실제적인 규범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은 “국민 생존권의 보장”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현 정부의 공약인 현행헌법의 “경제의 민주화”(제119조 제2항)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넷째, 이익균점권의 제헌헌법상의 논의는 해방 후 우리나라의 비상경제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무단 사용한 우리 재산(이른바 ‘적산’)은 해방 후 특수한 물권적 형태(사회적으로는 마치 무주물처럼 다루어지기도 했다)를 띠게 되었다. 해방 직후 적산에 대해 민족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지만, 해방직후 과도기 남한은 이념적으로 이 재산을 모두 국유화할 수 없었고, 사실상 관리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불하하는가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제헌의회(특히 대한노총)는 이런 비상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이익균점권이 도출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이익균점권을 정치적 기술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익균점권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이익균점권이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헌법화하였고, 현대에 만연된 노동의 소외감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초를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노동유연화경향성 속에서 이익균점권의 재헌법화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동위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도 이익균점권은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환경조성의 토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 노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주었다. 어떻게 그 유산을 상속을 받아 활용할지는 우리 현 세대의 몫일 것이다.

#### ※ 참고 문헌

##### ◎ 단행본

이홍재,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 국회속기록의 현장증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편, 1979.

##### ◎ 논문

송강직,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가 법리의 향방, 동아법학 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신용옥, “제헌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성 이념”,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9.

\* 황승흠, 전계논문, 320면.

이홍재,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의 심의의 쟁점 - 기업경영참가권 보장논의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9.

이홍재,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우촌 전진한의 사상 및 역할 - 우촌의 사회법사상궤적의 탐색을 위한 ‘초심곡(初心曲)’” -, 서울대학교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 한국공법학회, 2002.

홍기태, “해방 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성립”,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편,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89.

◎ 기타 자료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네이트 웹툰, 2013. 06. 12 ~ 2014. 08. 27, 8회,11회,15회,16회.

헌법제정회의록.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78932&q=%EB%A0%88%EB%93%9C+%EC%BD%A4%ED%94%8C%EB%A0%89%EC%8A%A4>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22872&q=%EC%A0%81%EC%82%B0>